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보도	2026.8.28.(금) 10:00	배포	2026.8.27.(목)		
담당부서	공시심사국 공시심사기획팀 공시심사2팀 공시심사3팀	책임자	국 장	이동규	(02-3145-8420)
		담당자	팀 장	김종환	(02-3145-8422)
		담당자	팀 장	최태민	(02-3145-8450)
		담당자	팀 장	한만조	(02-3145-8463)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	책임자	국 장	권영발	(02-3145-8100)
		담당자	팀 장	이동혁	(02-3145-8482)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책임자	본부장	정형규	(02-2003-9014)
		담당자	부 장	하영훈	(02-2003-9370)

**충실한 증권신고서는 신속하게, 부실한 신고서는 엄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 개최 -

I. 간담회 개요

최근 IPO·유상증자 시장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충실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증권사와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심사 및 제도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투자자보호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일반 기업의 자금조달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충실하게 작성된 증권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하는 한편,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가 반복적으로 미흡한 신고서에 대해서는 투자자 주의환기 및 심사업무 효율화를 위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 도입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IPO 수요예측 제도」 관련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 제도」의 주요내용을 논의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승우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원칙이지만,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관사도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조력자인 동시에 자본시장의 게이트키퍼로서 충분한 실사와 주주소통을 바탕으로 중자 경위와 자금사용 목적 등을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정과 심사지연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 개요 >

- ◆ 일시/장소 : '26.8.28(금) 10:00~11:30 / 금융투자협회 22층 중회의실
- ◆ 참석자 : (금융감독원) : 이승우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공시심사국장 등
(금융투자협회) : 자율규제본부장, (증권사) 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담당 임원(11사)

II.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1 충실한 신고서는 신속하게, 미흡한 신고서는 엄정하게

금융감독원은 발행사의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부실한 증권신고서 제출시에도 상세한 기재보완 사항을 명시하여 정정요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러한 관행에 의존하여 최초 신고서 작성단계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정요구 이후에도 보완이 미흡하여 정정과 재정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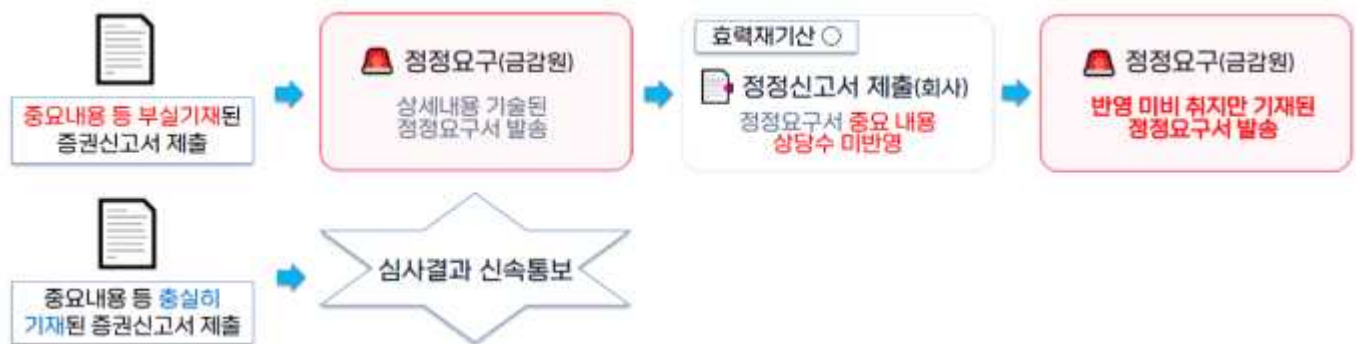
이러한 반복적인 정정은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한정된 심사자원이 일부 신고서에 과도하게 투입되어, 충실하게 작성된 다른 신고서의 신속한 심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관사가 인수·주선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심사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합니다.

최초 정정요구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된 정정요구서를 발송하되, 정정요구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부터는 중요 정정사항 중 다수의 보완이 미비한 경우에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하였다”는 취지만을 정정요구서에 기재하여 발송하고 동 내용을 DART를 통해 시장 및 투자자에 공개하여 투자판단에 참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반면,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에게 전달하여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번 간담회에서는 증권신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어 정정요구를 받지 않은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향후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신고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충실한 안내를 통해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사업무를 운영하겠습니다.

[증권신고서 기재수준별 심사흐름도]



2

IPO 제도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IPO 시장의 기업가치 기반 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수요예측 제도개선 방안*('25.1.21. 발표)이 '25.7월부터 시행되어 개선제도 정착 과정 및 효과 분석을 위한 실태점검[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제도시행 전('25.1.1.~6.30.)과 제도시행 후('25.7.1.~'26.6.30.)의 공모주 배정수량(SPAC 제외)]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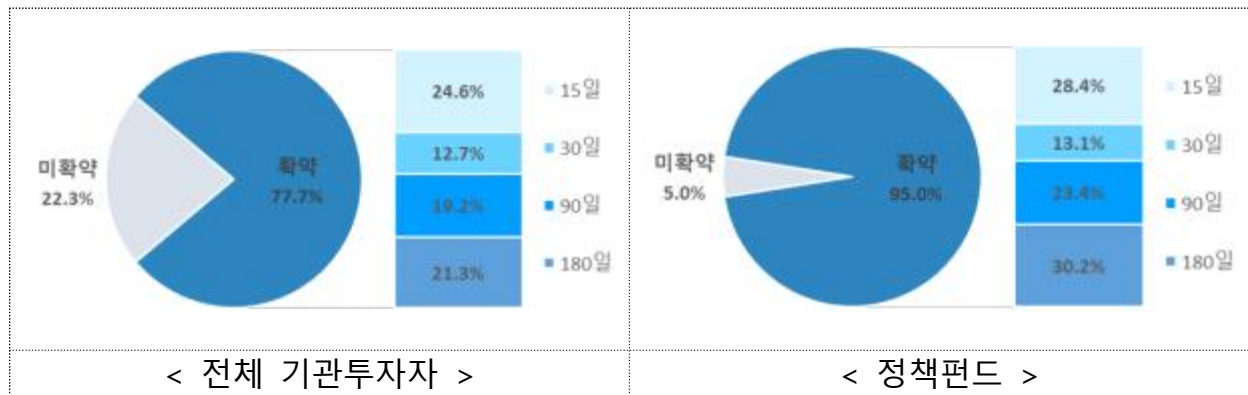
* 250121_(보도자료)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참고

점검결과,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제도개선 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배정수량 중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77.7%로 제도개선 전(29.0%)에 비해 48.7%p 증가하고 정책펀드의 의무보유확약 비율도 95.0%로 제도개선 전(35.8%)에 비해 59.2%p 증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높아진 의무보유확약 비율에도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15일 확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모운용사·투자일임사 등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요건 강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아직 크지 않은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IPO시장이 단기적인 공모주 차익 실현보다 기업가치에 기반한 중·장기 투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업계 의견과 실제 운영상황을 충분히 살펴 필요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제도개선 후 의무보유확약일수별 확약비율



3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중 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

금융감독원은 IPO 공모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중·장기 투자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오는 11월부터 도입예정인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관사와 제도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공모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일부를 일정기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중·장기 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하여 IPO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상장 직후 단기 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공모가격을 산정하고, 중·장기 투자자를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공모주를 배정하는 주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주관사는 사전수요예측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일시, 상대방, 제공정보 등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며, 코너스톤 투자자 선정·배정 과정에서도 투자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충분히 검토·확인하고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4.23일 국회를 통과하여 '26.11.13일 시행 예정이며, 제도 세부 운영방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마련되어 현재 입법 예고중('26.7.30.~'26.9.8.)인바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 전까지 주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관사도 새로운 제도가 IPO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Ⅲ.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을 향후 심사 및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시장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와 감독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가 정정요구 차등화 기준 및 절차

level 1 기존 정정요구

- 대상 : 최초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 요건 : 통상적인 수준에서 중요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에 대한 보완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 방법 : 현행과 동일하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된 정정요구서를 전달

level 2 강화된 정정요구

- 대상 : 정정요구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 한정
- 요건 : 정정신고서 심사결과, 일부 내용은 보완이 되었으나, 중요 정정사항 중 다수의 보완이 미비한 경우
- 방법 : 정정요구서는 발송하되,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하였다'는 취지만을 기재

나 차등화 심사 내용 시장에 공개

- DART에 공시되는 정정공시 안내를 통해 심사 차등화 내용을 시장에 공개 함으로써 투자자 주의환기 촉구

<정정공시 안내 문구(안)>

Level 1 (현행과 동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Level 2 (신설)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xx.x.x.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사항 반영이 미비하여,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추후 제출되는 정정신고서가 여전히 'xx.x.x.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